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7호 / 2026년 09월 04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실질임금 공방,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일괄 안 제시 요구에, 사측은 아직 검토 중

어제 9/3일(목) 9차 임금교섭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전달한 지 벌써 두 달째다. 그러나 교섭을 진행할수록 공감대 형성보다 실질임금을 두고 공방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실질임금 정체 문제는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월급제 도입 이후 11년이 지났고, 지금의 급여 수준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소하자는 요구다.

■ 월급제 11년, 임금교섭에 확인된 것!

사측은 교섭에서 “당시 102%로 맞췄다. 임금인상 효과의 차이는 부정하지 않는다. 평균연봉 1억370만원에는 잔업, 특근이 포함되었다.” 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임금 정체 해소와 거리가 멀다. 월급제라며 잔업 특근이 웬말인가

월급제 이전과 비교하면 △상여금 600%와 당시 O/T 35시간의 수혜액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생산성 향상은 17.5%였는데, 보전 수당으로 월정액 31만원이 책정되었다. 그마저 28만원으로 기본급화되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주차수당이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이 조정되었다. △임금체계에 맞게 임금인상 방법도 달랐어야 했다.

구분	월급제 이전	월급제 이후	비고
상여금	750%	150%	600% 기본급화
상여금 O/T	262.5시간/750%	60시간/150%	연 210시간 O/T 효과 감소
보전수당	-	31만원(28만원 기본급화)	약 17.5% 생산성 향상
주차수당	통상급으로 지급	기본급으로 지급	통상급-기본급=차액 감소
야간수당	70%	50%	20% 감소
연차수당	150%	100%	50% 감소
임금인상 효과	12개월 + 750%(19.5)	12개월 + 150%(13.5)	임금인상 6개월치 수혜 감소
월급제 효과	100%	102%	고정급 효과 2% 상승

월급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 임금인상 방법도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측이 주장한 월급제 취지가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 임금저하 없는 급여라고 했다. 월급제 도입 전과 그다음 해를 비교하면 분명 102%였기 때문에 고정급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처음 설계한 월급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실질임금이 정체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 월급제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자는 것!

노동조합도 월급제 합의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제도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는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당시 월급제는 고정급을 높이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11년이 지나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났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임금 저하 없는 급여’ 취지는 무색해졌고 ‘진입 특근을 해야 하는 고단한 월급제’ ‘높은 생산성만 남은 월급제’로 남았을 뿐이다.**

25년 임금인상은 호봉승급분 31,839원 포함 136,839원이었다. 과거처럼 상여금 600%가 그대로 있었다면 상여금에도 반영되어 연간 82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상여금에 포함되었던 년 0/T 210시간도 임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상승하는 구조였다.**

2020년 임금동결, 21년 6만5천원, 22년 7만1천원, 23년 7만8천원, 24년 9만3천원이 임금인상되었다. 월급제 이전에는 임금인상이 얼마였을까? 그래서 지금은 월급제 보완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월급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월급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월급제 수당과 기본 0/T 20시간 요구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14년 당시 임금인상 요구 자료의 일부다.

만도노동조합 조합원 기초 임금현황(2014년 3월 기준)						
평 균		월 할 평균(단위 : 원,%)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평균임금	기본급	통상임금	고정상여
44.6세	19.9년	4.0명	4,509,770	2,232,012 (49.49%)	2,475,542 (54.89%)	1,898,144